목록

24년 이용계약서 ····· 1
수급자안전관리 ····· 11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 20
입소 관련 동의서 ····· 23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야간보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 소	( )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다원주간보호센터	시설종류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 성명	이 지 영	연락처	033-910-8275
	주 소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둔일길3 (창촌리)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생년월일	19 . .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 소	(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7:00 ~ 18:00	일요일 휴무 공휴일 운영
토	07:00 ~ 18:00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다원주간보호센터 계좌 **농협 355-0081-7391-03**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확인 및 동의】

1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예 □	아니오 □
3	미이용일 비용(수급자 사정으로 미이용시 평일(월~금)기준으로 월5일(미이용일 급여비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의 50% 산정하여 수급자가 부담함)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4	이동서비스 안전수칙을 제공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5	수급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대표자 이 지 영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계약자) '갑' 이용자 (인)

(보호자) '병' 대리인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2등급	36,850	49,420	61,480	67,720
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4등급	32,470	44,040	55,210	61,000
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인지지원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40% 감경대상자	9%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식사재료비 : 3,850 (1식)기준으로 계산

간 식 비 : 1,000 (1일)기준으로 계산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실 방문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수급자 안전관리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다원주간보호센터

욕 창 예 방

◎ 욕창 예방을 위해 욕창의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자주 발생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 욕창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욕창예방 활동**

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 정도 자주 체위 변경해준다.
③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④ 시트의 구김살과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침상은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청결을 유지한다.
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에어매트)와 베개를 장만한다.
⑥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⑦ 관절의 최대운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한다.
⑧ 호발부위에 베개를 대어주며 자주(적어도 4시간)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⑨ 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 보호 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⑩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
⑪ 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⑫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⑬ 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낙 상 예 방

◎ 낙상이 잘 일어나는 환경으로는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의 낙상 위험요인들을 제거한다.

◎ **낙상 예방방법**

①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제공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②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③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④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⑤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⑥ 대상자에게 낙상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일어서기전 몇 분 동안 발을 늘어뜨리기, 느리게 걷기,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도움 요청하기)
⑦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⑧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인다.
⑨ 대상자 이동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시킨다.
⑩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 **낙상 발생시 응급대처.**

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추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④ 응급을 요하는 낙상의 경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 신속하게 119응급센터에 구호를 요청하도록 한다.

탈 수 예 방

◎ 갈증 느끼면 이미 탈수상태, 탈수는 필요한 수분양 보다 적은 양의 수분을 공급받은 상태를 말한다. 대개 체중의 1%이상 수분이 부족할 때는 탈수상태라 한다.
물을 찾게 되는 갈증은 보통 체중의 0.8%-2% 이상 탈수가 됐을 때 느낀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탈수상태인지 모를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탈수 현상이 예상외로 심해 질 수 있다. 이 감소는 젊은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 일 수 있다.

◎ **탈수의 예방**

① 노화에 따라 갈증감각이 저하되므로, 갈증이 나지 않아도 하루 6~8컵(1500~2000cc)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②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돌보는 사람이 충분한 수분섭취를 시킨다.
③ 요실금이 있는 수급자에게 수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수축시켜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은 약 1.4ℓ, 소변 외에 배출되는 수분은 약 1ℓ로 총 하루 배출 수분은 2.4ℓ 수준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정도의 수분은 매일 체내에 공급해 줘야 한다는 말. 사람들이 하루에 음식 등으로 섭취하는 수분은 약 1~1.2ℓ 정도이다. 따라서 나머지는 물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평균 1.5ℓ, 종이컵으로 8~10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배 변 도 움

◎ **노인의 배변장애의 원인**

1) 활동량 및 체력저하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전반적인 신체 및 장기 기능저하로 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장의 활동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까지 변이 내려와도 배변시 힘을 충분히 줄 수 없어서 변이 출구에서 막혀 배출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으로 침대에 장기간 누워 있다든지, 신체활동의 저하로 먹는 것도 줄고, 식이섬유와 수분의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2) 식욕부진과 만성적인 질환 노인은 원래 식욕부진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식물 특히 식이섬유의 섭취 감소로 한층 더 배변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질환, 악화된 치핵 등 항문질환, 신경정신질환, 약물섭취 등의 원인이 겹쳐서 노령에서 배변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3) 이완성 변비로 인한 분변매복 노령의 배변장애는 만성질환이나 대장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면 대장무력증 때문 일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동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며칠간 변을 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딱딱한 분변이 직장에 정체되거나 축적되어 분변매복을 일으켜 직장팽만감, 직장내 이물감, 배변긴급, 직장과 복막의 막연한 동통을 일으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장폐쇄를 일으킵니다.

◎ **배뇨훈련**

① 3~5일간 배뇨일지를 작성하여 배뇨패턴을 점검한다.
② 1주 단위로 적응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든다.
③ 변기나 화장실을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배뇨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④ 긴박감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이완요법, 케겔운동 등)을 가르친다.
⑤ 대상자가 정해진 간격으로 배뇨하도록 돕고, 배뇨조절이 가능해지면 배뇨 시간 간격을 늘릴 수 있다.
⑥ 대상자의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섭취한 수분의 양과 시간, 배설량과 시간을 계속 기록하도록 한다.
⑦ 대상자에게 가능하면 지정된 시간까지 참도록 격려하고, 목표 달성 시 긍정적인 강화를 한다.

관절 구축 예방

◎ 관절구축의 정의

수급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법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오래 움직이지 않음과 고정된 자세에서 생긴다.

◎ 관절구축예방 방법

관절운동은 관절의 주변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관절구축예방에 강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① 손가락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위치 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주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유 연성 운동

· 어깨, 팔 앞으로 구부리기 운동, 어깨 두드리기, 옆으로 틀기
· 등뼈 움직이며 복근 늘리기, 발끝운동, 발운동(걸음걸이 바르게)
· 심호흡(호흡조절운동), 허수아비자세(신체균형 유지)

◎ 일상생활 동작

· 구르기,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이동하기, 양손으로 일어나 앉기
· 앉은 자세에서 균형잡기 및 양팔로 상체 밀어 올리기,
  침대 가장자리 걸터앉기
· 손과 무릎으로 균형잡기

◎ 바른자세로 보행(걷기)하기

· 어깨와 골반을 똑바로 세운다.
· 턱을 당겨올려 머리를 바로 한다.
· 무릎과 고관절을 약간 구부리고 발을 앞으로 내민다.
· 발뒤꿈치부터 발을 땅에 닿게 한다.
· 무릎을 완전히 신전시켜 체중부하를 할 수 있게 한다.
· 걸을 수 있을 만큼만 보행하도록 한다.

치 매 예 방

◎ **치매 예방 수칙**

①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한다.
②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③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타인과 가까이 지내게 한다.
④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⑤ 노화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⑥ 비만을 치료한다.
⑦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⑧ 고지혈증 및 혈압을 조절한다.
⑨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⑩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 한다



노인 학대 예방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다원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 기관 안전수칙 목표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만들어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 운전자 및 동승자

구분	요건 및 역할
운전자 자격요건	- 운전자는 차량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차량에는 차량검사증, 자동차보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합니다. - 운전자는 매일 차량에 대하여 기본 점검을 합니다.
동승자의 역할	- 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확인합니다. - 승하차를 지도하고, 안전하게 착석 후 차량을 출발합니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및 안전을 확인합니다. - 이동서비스 시작에서 종료 시 안전하게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인수인계합니다. - 차를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안전을 확인한다.
장기요양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4조 1항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참조)	

○ 차량안전수칙

1) 차량운전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2) 승인 없이 지정된 차량외의 운전을 금한다.
3)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반드시 엔진을 꺼야 하며, 키를 빼서 휴대하여야 한다.
4) 차량정비에 쓰이는 체인. 호이스트. 작키. 기타기구는 완전한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휘발유 주유시는 엔진을 꺼야 한다.
6) 운전면허증, 차량검사중, 이동서비스 일지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7) 차량보안 용품인 안전표시판 스페어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8) 운전전이나 운전 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그날의 일기상태, 노면상태를 미리 알아두어 안전운행이 되도록 한다.
9) 제반 교통수칙을 엄수함을 물론 교통도덕에 벗어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10) 운행중 신호나 지시는 엄수하고 담배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 말 것.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10계

하나, 이동서비스 이용 시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차량 탑승 시 뛰지 않기
둘 , 차량 탑승 후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기
셋 , 차량에 탑승 후 내릴 때까지 안전띠를 착용하기
넷 ,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 후 일어서기
다섯, 차량에 탑승 후 큰소리로 말하지 않기
여섯,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안전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리기
일곱, 차량에서 내린 후 차도로 횡단하지 않기
여덟, 차량 탑승 시 가방은 어깨에 메고 타기(양손 사용 자유롭게)
아홉, 차량 탑승 시에는 끈이 있는 옷의 착용을 지양하기
열 , 우천시 차량탑승 시 우산이나 우비 등이 차량에 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 사고시 조치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조 치 사 항	상 세 내 용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
안전한 곳 이동처리	즉시 정차 후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합니다.
사고신고	모든 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12에 즉시 신고, 규정은 3시간 이내) 경미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고 사실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차량운행표

수 급 자		보 호 자		연 락 처	
주 소	( )				
이 용 요 일			이 용 시 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오전00시 000분 ~ 오후 00시 00분		

※ 이동서비스 시간 및 이동차량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소 관련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상기 본인은 본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정보수집

① 기본정보 ② 개인이력 및 가족 ③ 질병관련 정보
④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⑤ 장기요양계획 수립과 그 유지 관련 정보 활용 및 보관

2. 수집정보 활용

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연계 종료기록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③ 원내 게시판 게시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문서는 5년간 보존하며,
개인정보 이용기간은 인정서 계약기간내로 함.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안전사고 책임각서

수급자 및 보호자(입소대리인)서약

본인(수급자명:) 및 **보호자(수급자대리인:)**는
다원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규칙과 제반지시에 따를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소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것이며,
아래 **"예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선행사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치료나 합병증에 대하여 다원주간보호센터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본인(입소자) 및 보호자(입소대리인)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예 시

1. 치매로 인하여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행동하여 낙상으로 인한 전체적 신체손상의 경우
2.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골절인 경우 (대퇴부, 척추제 압박골절, 기타 부위 골절 등)
3. 개별적 보행이동시 부딪혀 넘어져 발생되는 전체적 신체손상(골절포함)
4. 원내 이동 및 수급자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연부조직 등의 손상
5. 입원 시 어르신의 면역기능 저하 등으로 감염될 수 있는 폐렴, 요도염, 장염 등
6. 뇌졸중 등 중증질환, 노령으로 인하여 음식물 삼키는 연하기능저하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갑작스런 질식사고
7. 화장실 좌변기 이용 시 요양보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져 발생 할 수 있는 전체적 신체손상
8. 기타 본 센터 및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고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는 면책

9. 운동, 작업, 재활물리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골절 등 제반 합병증)
10. 심장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심정지

수급자 및 보호자(입소대리인)각서

귀 다원주간보호센터의 입소기간에 수급자의 개인적인 돌발행동으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 및 보호자(입소대리인)가 질 것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동의합니다.
본 안전사고 책임각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응급사황 관련 동의서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치료의 한계를 정하므로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함입니다.

1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원하는 병원이 있으시면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2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동행하실 가족 분을 기록해 주세요 (관계, 연락처)		
3	심폐 소생술을 원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위 결정된 사항에 따르겠으며 이에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연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할 경우 병원처치에 대한 모든 내용의 결정을 시설의 결정에 가족_____님은 모두 받아 드리겠습니다.

◈ 사전의사 결정 동의서

1. 입소기간 중 최대한 주의를 함에도 어르신의 병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변상의 부상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어르신 생활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음식(기도 흡인을 유발할 수 있는 끈적끈적한 음식: 찰떡, 땅콩, 사탕, 젤리 등)을 금하고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하는 병원으로 후송 및 치료와 관련된 제반경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모든 것은 담당의사(연계의료기관 & 주 거래병원)의 의학적 판단에 위임하고 고령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문제 발생 시 의학적 책임을 시설에 묻지 않을 것을 보호자가 서약하며, 어르신에게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자 연락이 두절 될 경우 센터의 처치와 조치를 따를 것 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 경비 및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주간보호센터의 설명대로 제비용 납부 및 행정절차에 임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본 시설은 입소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CCTV 녹화되고 있습니다.

1. 설치 목적 : 안전사고 예방
2. 설치 장소 : A동 생활실 4곳, B동 생활실 1곳, 주출입구, 부출입구, 데크 3곳, 마당 2곳
3.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2달 보관)
4. 관리책임자 : 대표 이지영 (033-910-8275 / 010-8940-4296)
5. 법적근거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2항)

본인은 본 장기요양기간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녹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20 년 월 일

대상자(입소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자(보호자) : _____ (서명 또는 인)

다원주간보호센터